

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6-138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1. .
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청구 연서 주민수를 2,000명 이상에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연서 주민수 변경 (안 제2조)

○ 당초 : 2,000명 이상 →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 이상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”를 “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”로 한다

제2조 중 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장에게 조례의 제·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,000명 이상이어야 한다.”를 “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동두천시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기획감사실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·성명	기획감사실장 홍 현 섭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의회법무팀장 박 상 덕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주무관 박은수 860-2055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제15조 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청구 주민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장에게 조례의 제·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,000명 이상이어야 한다.	제2조(청구 주민수) -----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동두천시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.